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 6. 28
조례 제872호]

제1조(「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호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1·2급 장애인”을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에 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3조(「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 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 로서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
3			연금지급액의 순위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 을 우선으로 함)	- 6개월 이상의 치료 를 요하는 질환자, -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
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한다.